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I. 제안이유

지역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 전산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II. 주요골자

집행기관의 정원 706명을 707명으로하고, 그 증원된 정원 1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안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2항)

III.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표 준정원의 책정)

○행정자치부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행정자치부 자제 12200-698(2000. 9. 23))

IV. 검토의견

○ 현재 이천시 전산인력은 4명으로 행정자치부 인력순증 승인기준(2000. 6월말 기준)은 인구 20만 미만시의 경우 6명으로 책정하였는데, 부족인력 2명이상 시는 1명 증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2단계로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98~2000년까지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건축, 재·세정을 추진토록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2000~2002년까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인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증원 승인을 한시적(2000년 12월 31일까지)으로 보강토록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